

7. 建築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交通部令 第46號 1996. 1. 18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 2(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 제1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 법 제5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정 ·개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2.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중 “영 제9조 제1항”을 “법 제8조 제1항 및 영 제9조 제1항”으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①법 제8조 제1항 및 영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3. 법 제8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제7조 제1항중 “법 제8조 제2항 및 영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을 “법 제8조 제3항 및 영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방건축위원회”를 “영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로, “영 제8조 제2항 각호”를 “영 제8조 제4항 각호”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건축조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중 “영 제8조”를 “법 제14조”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중 “시장등”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 제5항 본문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6항중 “시장등은 제1항 내지 제5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으로, “별지 제9호 서식 내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증”을 “별지 제9호 서식·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필증”으로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13조 제1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증”을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건축신고”를 “축조신고”로 한다.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4의 2의 설계도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사용검사에 관한 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신청서와 이에 따른 사용검사필증은”을 “사용승인신청서와 이에 따른 사용승인서는”으로, “사용검사신청서에는”을 “사용승인신청서에는”으로 하며 동조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중 “영 제17조 제1항”을 “영 제17조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영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을 “영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 2(설계도서의 작성등) 영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도서의 관리)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독주택과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건축물안에 고정식 도서보관함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서(변경이 있

는 경우에는 변경한 도서를 말한다)

2. 별지 제19호 서식 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
3. 별지 제24호의 2 서식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대장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또는 현장관리인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일지·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23호의 2 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의 4 서식에 의한다.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공사감리업무) 영 제19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 제1항중 “시장등에게 건축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3호의 5 서식”으로, “건축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 2 서식의 건축물사용검사 및 검사조서”를 “별지 제23호의 6 서식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 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사용검사신청서(이하 이 조에서는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승인신청서”로,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하며, 동항 제1호중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등”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 제2항 제2호 단서 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의 3 및 제28조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 3(피난계단등의 구조) ① 영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마. 계단실의 옥내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옥내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의 0.9미터 이상

- 으로 할 것
-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
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
결할 것
-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등
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
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
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
연재료로 할 것
- 라.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이 있거나 예비전원
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
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
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
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
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
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안쪽
에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
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
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
하로 할 것
-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
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 자. 건축물의 안쪽으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영 제
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영 제
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
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총
또는 지상총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
상으로 할 것
-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

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 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의 2(방화구획의 구조)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터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제2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⑥영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제3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의 2 내지 제31조의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 2(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굴뚝의 옥상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

- 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계단탑·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계단탑·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 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 건축물의 지붕속·반자위 및 가장 아래바닥 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재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 3(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 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 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제28조의 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의 4(방화문의 구조)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3.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을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2.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인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 ③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제1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제87호”를 “제85호”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제87호·제98조 내지 제101호”를 “제85호·제96호 및 제97호”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5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제2항 본문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 2(관계전문기술자) ①영 제91조의 3 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구조분야의 공학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건축구조분야의 공학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건축기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

행한 자

②영 제91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 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8조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법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표지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며, 일반이 보기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②영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6호의 2 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영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와 시정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 2(청문절차) ①법 제70조의 규

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사유 및 일시·장소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3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 2(분쟁조정의 신청) ① 영 제11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② 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의 시방서란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의 항목란중 “건축물의 인동간 거리”를 “인접건축물과의 거리”로, “용적율”을 “용적률”로 하고, 동표 제2호의 항목란중 “복도 폭”을 “복도 너비”로, “출구 폭”을 “출구 너비”로 한다.

별표 6 제3호의 표중 “띄는 거리”를 “띄우는 거리”로 하고, 제6호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8의 “계단 및 계단참의 폭”란을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란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 6. 건축규제계획란중 “용적율”을 “용적률”로 한다.

별표 12의 작성자란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내지 [별지 제6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제 제7호 서식중 “공사현장관리자”를 “현장관리인”으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중 건축주명의변경신고안내의 근거법규란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행규칙”을 “건축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중 “32 용적율”을 “32 용적률”로, “50 용적율(%) (기준 포함)”을 “50 용적률(%) (기준 포함)”으로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의 착공연기신청안내의 근거법규란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내지 [별지 제2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 2 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의 6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 서식의 “시공자”란을 “공사시공자”란으로 하고,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안내의 근거법규란 및 유의사항란중 “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 3 서식의 도로폐지(변경)허가신청안내의 근거법규란 및 유의사항란중 “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 서식] 및 [별지 제26호의 2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 서식중 “②사용검사일 년 월 일”을 “②사용승인일 년 월 일”로 하고, “건축주 또는 축조주”란을 “건축주”란으로 한다.

별지 제28호 서식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도지사등”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사법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 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17조 제2항중 “제6조 제2항”을 “제6조 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 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 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중 “사용검사를” 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중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일자”로, “시공자”를 각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한다.

③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④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2호 가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제69조 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동의대상”을 “사용승인동의대상”으로, 동조 제3항 후단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⑤소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제69조 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동의대상”을 “사용승인동의대상”으로, 동조 제3항 후단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⑥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 제9호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하고, 동조 제17항 본

문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으로 한다.

⑦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중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2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한다.

◇개정이유◇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1995. 1. 5. 법률 제4919호 및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배치도, 1층 평면이 표시된 평면도, 입면도등 기본설계 도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각종의 평면도·입면도 및 단면도와 구조도등 세부설계도서는 착공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도록 함(제6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별표 2 및 별표 4의 2).
- 나.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토지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전기·통신, 상·하수도등 지하 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매설물의 관리 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함(제14조 제3항).
- 다. 피난계단·방화구획·굴뚝·방화벽·방화문등의 구조에 관하여 규정함(제26조의 3, 제28조의 2, 제31조의 2, 제31조의 3 및 제31조의 4).
- 라. 건축구조기술사외에 건축구조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건축구조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및 건축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 2 제1항).

〈건설교통부 제공〉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제6조 제1항 관련)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인접건축물 현황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입면도	임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단면도	임의	1. 종·횡 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별표 4의 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 제1항 관련)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배치도 각층평면도 각층입면도 각층단면도	임의	◦ 건축허가도면외에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경우와 건축 허가도면의 변경이 있는 경우(건축허가신청시 제출한 도면과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구조도(구조 안전확인대 상건축물)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시방서	임의	1. 시방내용(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실내마감도	임의	◦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소방설비도	임의	◦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 소방관련설비
건축설비도	임의	◦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등 건축설비
토지굴착 및 용벽도	임의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2. 흙막이구조 3. 단면상세 4. 용벽구조

[별표 10]

건축재료(제32조 관련)

1.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2.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3. 보통합판
4.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5. 옥내용 소형스위치
6. 배선용 꽂음접속기
7. 도어클로우저
8. 원통형·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록
9. 수도꼭지
10. 철동밸브
11. 복층유리
12. 보주경첩
13. 배관용 탄소강관
1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5. 난방용 주철 방열기
16. 난방용 강판 방열기
17.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18. 경질 비닐 전선관
19. 강제 전선관
20. 프리텐션방식 고강도 콘크리트말뚝
21.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피시말뚝
22. 도자기질 타일
23. 가단 주철제관 이음쇠
24. 600볼트 비닐 절연전선
25. 보일러 및 교환기용 탄소강 강관
26. 플로어링 보드
27.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28. PVC(비닐)계 바닥재
29. 비닐 석면타일
30.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31.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외부용)
32. 광명단 조합페인트
33. 조합페인트
34. 조합페인트 목재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35.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내부용)
36.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37.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
38.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39. 투명라카
40. 우드실라트 콘크리트
41.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42. 알키드수지 바니쉬
43. 스파바니쉬
44. 슬레이트 및 기화용 페인트
45.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광택에나멜
46. 형광램프(일반조명용)
47. 소켓
48.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49. 강화유리
50. 일반배관용 강제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51. 특수배관용 강제맞대기 용접식 관이
음쇠
52.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53. 스위치박스 방열기
54. 암면 단열재 제품
55. 유리면 보온재
56.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57. 누전차단기
58. 배선용 차단기
59. 구명탄용 온수보일러
60.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61.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62. 주택용 분전반
63. 푸러쉬플레이트
64. 노오말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65. 박스(경질 비닐 전선관용)
66. 카아바나이프 스위치박스
67.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68. 볼밸브
69. 수도용 제수밸브
70. 주철밸브
71. 파이프휀거
7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73.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74.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75. 타티에폭시 수지도료
76. 벨로우즈형 신축관이음
77. 플러팅밸브
78.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79.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80.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8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82. 하이탱크용 사이펀
83. 로탱크용 불탭
84. 로탱크용 사이펀
85. 시멘트벽돌
86. 동 및 동합금 관이음쇠
87. 강관 용접식 플렌지
88. 플로어힌지
89. 난방용 알루미늄 방열기
90. 접합유리
91. 아우트레트 박스
92.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프레스
이음쇠
93. 폴리에틸렌 이음쇠
94. 동 및 동합금플레이어 관이음쇠
95. 동합금 납땜 관이음쇠
96. 보통벽돌
97. 시멘트블록